일제하 총독부 박물관 문서와 관리체계

김 도 형*

1. 머리말
2. 총독부 박물관의 기구 변천
3.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내용과 문서체제
 1)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내용
 2)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체제
4.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보존과 이용 방향
5. 맺음말

1. 머 리 말

한국을 강점한 이래 일제는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를

*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주요논저 : 「日帝의 肥料政策과 그 性格」『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지식산업사, 1989 ; 「勸業模範場의 식민지 농업지배」『한국근현대사연구』 3, 한울, 1995 ; 「日本人 農場·農業會社의 農業技術 普及體系」『國史館論叢』 7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울, 1998.

정점으로 통치기구를 설치 · 운영하여 왔고,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제도를 정비시켜 갔다.[1] 따라서 일제하 공문서는 식민지 지배체계를 알 수 있는 제1차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제하 공문서가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아 그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2]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일제하 문화행정을 담당한 총독부 학무국 관계기록은 그 양이 매우 적은 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족동화를 목적으로 문화적 지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재 약탈도 병행하였다.[3] 하지만 일제하 문화정책 및 문화재에 대해 그 동안 역사학계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문화적 지배와 문화재 정책에 대한 자료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선총독부 박물관' 의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문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실에 정리 · 보관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목록』(1996)과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 목록집』(1997)으로 간행되어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다.

1)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관제' 를 실시한 이후, 1911년 7월 18일 '조선총독부내훈' 제21호 〈조선총독부처무규정〉, 동 제22호 〈조선총독부문서취급세칙〉, 그리고 1912년 3월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에 의해 식민지 공문서 체제를 정비시켜 나갔다(金才淳, 「일제의 公文書制度 장악과 운용의 실제」『韓國文化』 16, 서울대, 1995, 377쪽).

2) 일제하 총독부 공문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지만, 특정기관에 대한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金才淳, 「韓國近代 公文書管理制度의 變遷」『기록보존』 5, 정부기록보존소, 1992. 金才淳,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와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 문서」『역사와 현실』 9, 한국연사연구회, 1993. 김상호, 「조선총독부의 문서관리」『기록보존론』, 아세아문화사, 1992.

3) 일제하 문화재 약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이구열, 『한국 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 李弘稙, 「在日 韓國文化財 備忘錄」『史學硏究』 18, 1964 ; 정영호, 「문화재 약탈」『한민족독립운동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89.

총독부 박물관은 총독부 소속으로 1915년 12월 개관된 이래 일제 말기까지 식민지 조선의 문화유적 및 유물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었다.[4] 그러나 일제는 총독부 박물관을 한국문화에 대한 순수한 학술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측면이 강하였다.[5] 따라서 박물관 중심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도 중요한 출토유물 자체에만 치중했을 뿐, '발굴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발표된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하 총독부 박물관 문서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중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식민지 문화재 정책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수단으로 문화적 지배를 강구해 왔고, 그를 위해 우리의 유물과 유적을 연구·수집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당시의 유물과 유적에 대해 종합적 개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제하 문화재 정책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총독부 박물관의 행정적 운영실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박물관의 조직, 기능, 정책,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역사연구의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제하 문화정책과 관련된 인물, 조직, 사건 등에 대한 실제적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역사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총독부 박물관 문서는 역사의 진실성 규명을 위해, 또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정통성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4) 일제하 총독부 박물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千田剛道, 「植民地朝鮮の博物館-慶州古蹟保存會陳列館を中心に一」『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 1997 ; 전경수,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1998 ; 崔錫榮,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湖西史學』 27, 1999 ;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의미」『제4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문』, 2000.5.

5) 崔錫榮, 위의 논문,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일제하 박물관의 기구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문화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박물관 문서의 생산과 문서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현재 문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총독부 박물관의 기구 변천

일제는 식민지 수탈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 · 예술품에 대해서도 그 우수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일제 자신도 공감하고 있었던 일이다. 즉,

> 조선의 상고시대에는 공예 · 미술이 현저하게 발달해서 일본이 이를 모방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오늘날 실제로 보존하고 있는 공예 · 미술품 가운데 회화 · 그릇 등을 조선인이 만든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나 혹은 조선예술을 모방해 제작한 것이라고 감정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 아울러 이들을 일본이 수 · 당나라와 직접 교역을 맺기 이전에는 최고로 삼았다.[6]

이처럼 일제는 일찍이 한국의 문화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집 · 조사하고 있었다.[7] 예컨대 통감부시대 탁지부(度支部)가 세키노 테이(關野貞)를 초빙하여 고건축(古建築) 조사를 위촉하였다.[8] 그후 총독부

6) 하종근 옮김, 『1927년 조선총독부 대외비 조사자료 제20집 日帝 植民官僚가 분석한 朝鮮人-사상과 성격적 측면-』, 세종출판사, 1995, 237쪽.

7) 일제 초기 일본인의 조사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박현수, 「일제의 침략을 위한 사회 · 문화 조사활동」『韓國史硏究』 30, 1980.
박현수, 「日帝의 식민지 調査機構와 調査者」『정신문화연구』 21-3(통권 72호),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8.

시기에 들어와 동경제국대학 이학대학 교수인 토리이 류우죠우(鳥居龍藏)로 하여금 인류학 · 민속학 · 고고학에 걸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토리이는 1910년부터 1916년까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수집된 선사유물이 총독부 박물관의 천추전(千秋殿)에 보관되어 일반에게 전시될 수 있었다. 총독부 박물관이 신설된 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와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등이 계속해서 유물을 수집하였다고 한다.[9]

일제하에 총독부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는 1910년 합방 이후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를 경복궁에서 개최하면서부터이다.[10] 공진회를 마친 후 1915년 12월 1일 공진회 당시의 미술관 건물을 본관으로 하여 '총독부 박물관'을 발족시켰다.[11] 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 총독부 고시 제296호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설치의 건'을 공포하고, 그해 12월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관람을 허락하였다.[12] 이곳에서는 주로 고적조사에 의한 수집품과 매장유물의 국고귀속품, 구입품, 그리고 각 사찰의 기탁품 등을 중심으로 역사, 미술공예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 · 진열되었다. 그러나 총독부 박물관은 이름만 '박물관'이었을 뿐 특별히 독립된 직제

8) 李成市,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한국문화』 23, 1999, 251쪽.

9) 有光教一, 『有光教一著作集』 제1권, 京都, 株式會社同朋舍出版, 1990, 서문 참조.

10) 우리 나라에 박물관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은 1908년 9월 기울어져 가는 국운 앞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창경궁 내에 '황실박물관'을 발족시킨 것이 시초였다. 황실박물관은 황실의 재정적 지원으로 삼국시대 이후의 불교공예품, 고려자기, 조선시대의 회화, 역사풍속도 등을 주로 수집하였고, 1909년 11월 창경궁을 공개하면서 식물원 · 동물원과 함께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11) 崔錫榮, 앞의 논문, 109-110쪽.

12) 〈朝鮮總督府 博物館 設置의 件〉 大正 4년, 總告 제296호(朝鮮總督府 編纂, 『朝鮮法令輯覽追錄』, 1916, 24쪽). 여기에서는 다만 관람시간과 휴관일을 정하고 있다.

가 없었으며,[13] 직원들도 주임, 수리보존을 담당한 기사 2명과 그 조수, 그밖에 청부인이었다. 그나마 조수나 기사는 하급직원에 속했으며, 청부인의 신분은 불안정하였다.[14]

그럼 구체적으로 '총독부 박물관'의 기구변천을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는 총독부 산하에 사법부, 농상공부, 탁지부, 내무부, 총독관방을 두었는데, 총독부 박물관은 초기에 그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나 총독관방 총무국에 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5] 박물관이 설립되기 이전에 한국의 고적조사는 총독부 내무부의 지방국과 총무국 참사관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물관이 생기면서 1916년 4월부터 박물관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7월 4일 총독부령 제52호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 及 遺物保存規則)이 공포되어 모든 유물을 등록하게 하였다.[16] 이와 함께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을 공포하고 '고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유적·유물·명승지 등을 조사하고 보존설비를 심사하게 되었다.[17]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진열할 유물이 더욱 많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일제는 일반 유물 소장자들로부터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17년 4월 총독부 고시 제90호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진열품 기탁 심득〉(朝鮮總督

13) 총독부 박물관은 학무국의 한 계(係)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직원들은 매일 그곳에 가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와야만 했다(金載元, 『博物館과 한평생』, 探求堂, 1992, 87쪽).

14) 有光教一·김성남 역, 「一九四五~四六에 있었던 나의 경험담」『韓國考古學報』 34, 1996, 7쪽.

15)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 吉川弘文館, 1953, 335쪽.

16) 이 규칙의 시행은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17) 藤田亮策, 「朝鮮の古蹟及遺物」『朝鮮古蹟及遺物』, 現代社, 1982, 5-6쪽.

府 博物館 陳列品 寄託 心得)을 공포하였다.[18] 이 규정을 보면, 총독부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물품의 명칭, 개수, 형상, 치수, 중량, 가격, 전래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기탁은 모두 무보수로 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총독부는 그해 8월 19일 관제를 개정하면서 부제(部制)가 폐지되고 국제(局制)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내무부 산하의 학무국이 정식으로 국으로 승격되면서 박물관은 총무국에서 학무국으로 그 소속이 옮겨갔다. 주지하다시피 학무국은 일제하 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 주로 교육·문화 행정을 담당한 교육·문화 행정기구였다.[19] 여러차례 관제가 변하였지만 학무국에는 학무과, 편집(수)과, 종교과·고적조사과, 사회(교육)과, 중견청년수련소·교학연수과, 연성과, 교무과 등이 있었다. 학무국에는 국장(칙임), 시학관(주임), 교학관(1939년 8월부터 설치)이 있었고, 각 과에는 사무관(과장;주임), 이사관(주임)이 있었다. 또한 각과에는 업무에 따라 전임직인 기사(주임), 통역관(주임), 속(판임)을 두었다. 그리고 소속 업무에 관한 조사업무를 분담하도록 임시직인 촉탁(판임)을 둘 수 있었다.[20] 일제가 박물관을 학무국내에 둔 이유는 박물관을 통해 조선의 문화·학예를 장악하면서 궁극적으로 조선을 동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3·1운동 이후 학무국은 이른바 '문화의 창달'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학무국내에 새로이 종교과(宗教課)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문화방

18) 〈朝鮮總督府 博物館 陳列品 寄託 心得〉 大正 6년 4월, 總告 제90호(朝鮮總督府 編纂, 『朝鮮法令輯覽追錄』, 1917, 8-9쪽). 이 고시는 총12조로 되어있다.

19) 일제하 학무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명화, 「朝鮮總督府 學務局의 機構變遷과 機能」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2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40, 12-13쪽.

면에서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21년 10월 일제는 학무국에 새로이 고적조사과(古蹟調査課)를 설치하였다. 학무과 소속이었던 박물관은 이 때 신설된 고적조사과에 속하게 되었다. 고적조사과에서는 박물관 업무뿐만 아니라, 고적조사사업(古蹟調査事業), 고사사고건축보존(古社寺古建築保存), 명승고적천연기념물(名勝古蹟天然記念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21] 그러나 고적조사과는 1924년에 단행된 총독행정 정리 때 폐지되고 이 업무는 다시 종교과로 이관되었다.[22] 종교과는 종교사무 이외에 박물관, 고적조사사업, 고사사고건축보존, 명승고적천연기념물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23] 그리고 1926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학무국장 주재 하에 개최된 도시학관회의(道視學官會議)에서 총독은 학교관련 사항 외에 '사유재산보호감독(寺有財産保護監督)에 관한 사항, 사찰폐지에 관한 사항, 사찰에 속한 불상(佛像)·고기물(古器物)·서화류(書畵類) 보호 처리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朝鮮佛教中央教務院) 기부금 출자방법에 관한 사항, 내지(內地) 각 종파에 속한 사원 소유의 부동산과 보물에 관한 규정' 을 계출하는 건 등을 지시하였다.[24] 또한 이때 경주지방의 불교예술을 탐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고대 한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1926년 6월 20일 총독부

21) 1923년 당시 고적조사과의 과장은 小田省吾(編輯課長 겸임)가 맡고 있었고, 고적조사과 사무는 주로 촉탁으로 고용된 藤田亮策·小場恒吉·野守健·山內廣衛·池田直熊·梁世煥·藤田整助·小泉顯夫·諸鹿央雄(慶州古蹟保存事務囑託) 등이 담당하고 있었다.

22) 당시 종교과 分室은 경복궁 내에 있어서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였다. 1924년 당시 과장에는 兪萬兼, 촉탁으로 野守健·池田直熊·小泉顯夫·李周淵·諸鹿央雄 등이 있었다.

23) 이 당시 종교과장은 兪萬兼이 맡고 있었는데, 그는 1924년 종교과장에 임명되어 1928년 3월까지 재직하였고, 이어서 또한 조선인 洪承杓가 1929년 1월까지, 그리고 1929년 4월부터 1932년 종교과가 존속할 때까지 李昌根이 담당하였다.

24) 道視學官會議概項, 『朝鮮』 135, 1926.8, 144쪽.

박물관은 경주박물관을 분관으로 편입하여 일반인들에게 관람시켰다.[25] 경주분관의 진열품은 주로 경주 금관총 기타 발굴유물 및 재단법인 경주고적보존회와 각 개인의 기탁품으로 충당하였다.

그후 1932년 2월 13일 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학무국에는 종교과가 폐지되고 내무국 산하 사회과(社會課)가 새로이 학무국으로 이속되었다. 그리고 폐지된 종교과에 속한 업무를 흡수·병합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회과의 관장사무는, ①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②제생원(濟生院)과 감화원(感化院)에 관한 사항 ③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④청년단과 청년훈련소에 관한 사항 ⑤도서관과 박물관에 관한 사항 ⑥경학원(經學院)과 명륜학원(明倫學院)에 관한 사항 ⑦향교재산에 관한 사항 ⑧종교와 제사에 관한 사항 ⑨사원에 관한 사항 ⑩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조사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총독부 박물관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33년 8월 8일 제령 제6호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공포된 일이다. 그리고 그해 12월 동령의 〈시행규칙〉이 총독부령 제136호로 제정되면서 1916년에 공포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폐지되면서 이것으로 대체되었고, 동령 〈시행수속〉이 총독부령 제42호로 공포되었다. 또한 위의 보존령에 따라 '조선총독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가 발족되어 자문역할을

25) 〈慶州博物館分館觀覽時間〉 1926년 6월 總告 제193호(朝鮮總督府 編纂, 『朝鮮法令輯覽』 下卷 1, 1940, 138쪽). 경주지방에는 1910년 慶州新羅會가 만들진 이후, 1913년 5월 慶州古蹟保存會가 발족되면서 신라시대의 유물을 수집하여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 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으로 편입되면서 초대 분관장에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취임하였으며, 1934년에는 사이또우 타다시(齊藤忠)가 분관장으로, 1938년에는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가 해방 직전까지 분관장으로 있었다.

수행하게 되었다.[26] 이제 비로소 일제는 조선의 유물과 유적을 체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33년 12월 이후 모두 조선의 문화재는 이 법령에 따라 조사 · 발굴 · 관리되었다.

그리고 전시체제로 가는 과정인 1936년 10월 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이 개정되어 사회사업 업무와 사회교육 업무가 구분되어 학무국에 사회교육과(社會敎育課)가 신설되고 사회사업 업무는 내무부로 이속되었다. 이때 사회교육과의 관장사무는, ①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②지방개량에 관한 사항 ③사회체육에 관한 사항 ④향교(鄕校)와 향교재산에 관한 사항 ⑤종교와 전릉향사(殿陵享祀)에 관한 사항 ⑥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조사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박물관도 사회교육과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부여에서는 1929년 전부터 부여고적보존회(夫餘古蹟保存會)가 발족되어 구객사를 '백제관'(百濟館)이라 하여 부소산 부근에서 출토된 시대별 유물들을 진열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총독부의 지령으로 부여분관을 신축하여 1939년 4월 1일 개관하게 되었다.[27]

본격적인 전시하로 들어가면서 박물관은 그 소속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닐 수밖에 없었다. 즉 사회교육과 업무는 사정국(司政局) 사회과로 이속되는 등 일제말기 총독부 박물관은 총독부의 여러 부서를 옮겨가면서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박물관의 존속은 전쟁 수행에 장애"라고 하고 본관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박물관 직원과 유물을 경주분관과 부여분관에 소개하였다.[28]

26) 朝鮮總督府 編纂, 『朝鮮法令輯覽』 下卷 1, 1940, 140-141쪽.

27) 부여에는 1929년 2월 27일 재단법인 扶餘古蹟保存會가 설립되었고, 이들이 운영하던 백제관에는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가 1935년 4월까지 관장으로 있다가 스기미츠로(杉三郎)가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부여분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崔錫榮,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의 출현」 『민속소식』 64, 국립민속박물관, 2000. 12.

28) 有光敎一 · 김성남 역, 「一九四五~四六에 있었던 나의 경험담」, 9쪽.

한편 일제시대에는 위의 총독부 박물관 이외에도 관립적 성격을 가진 박물관이 다수 있었다. 즉 1934년에는 공주에서 공주고적보존회(公州古蹟保存會)가 발족하여 백제시대에 대한 유물수집과 보존작업에 착수하였고, 1940년 옛 관아였던 선화당(宣化堂)을 옮겨 공주읍박물관으로 설립하여 공주사적현창회(公州史蹟顯彰會)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개성과 평양에도 1931년과 1933년에 각기 부립박물관(府立博物館)이 세워졌다. 개성에는 고려시대의 유물이 진열되었고,[29] 평양에는 고구려, 낙랑시대의 유물을 중심으로 진열되었으나 총독부 박물관에 비하여 진열품이 매우 적었다.[30] 그리고 1938년 덕수궁을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석조전(石造殿)에 일본의 근대미술품을 진열하여 상설미술관으로 문을 열고 회화, 조각, 공예로 분류 전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새로운 미술관 건물이 준공되면서 창경궁 내에 있던 황실박물관에서 미술품만을 골라 이관하고 '이왕가미술관' (李王家美術館)을 발족시켰다.

29) 開城府立博物館은 1931년 10월 개성부 내 유지의 기부금 3만 원으로 설치된 것이다. 그 동기가 된 것은 三井物産에서 高價의 古器物 다수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개성부에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三井物産은 위의 古器物을 총독부에 기증함으로써 개성박물관은 겨우 민간 기탁품 56점 및 總督府 博物館에서 빌린 것 244점 기타 당관이 소장한 것 47점 합계 347점뿐이었다(「開城府立博物館에 관한 件」『總督府 博物館 文書』 1933-36年 古蹟關係 庶務 雜件, 문서번호 295-15). 일제하 개성부립박물관에는 한국인으로 高裕燮과 閔泰植이 근무하였다. 개성부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崔錫榮, 「일제하 개성부립박물관의 개관」『민속소식』 63, 국립민속박물관, 2000. 11.).

30) 평양에 부립박물관이 세워지기 이전인 1913년 11월부터 평양의 유지들에 의해 名勝古蹟保存會가 만들어져 자본금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때 모인 금액이 5,140.93원이고, 이 금액으로 공원토지와 부벽루와 보통문 근방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4,618.66원이 소요되었다(「명승보존회」『新韓民報』 1914.1.18, 2면). 평양부립박물관에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관장이 되어 1945년 이후까지 남아있었다고 한다(崔錫榮, 같은 논문, 111쪽 ; 李進熙, 「三人の博物館人」『李刊 靑丘』, 靑丘文化社, 1990.5 ; 崔錫榮, 「일제하 평양부립박물관의 건립」『민속소식』 61, 국립민속박물관, 2000. 9.).

3.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내용과 문서체제

1)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내용

총독부 박물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독부 산하의 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공문서 제도에 따라 문서를 생산 · 관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총독부 공문서는 총독관방 문서과에서 일괄 관리되었지만, 박물관 문서의 경우 유물의 보존과 수리를 위해 박물관 자체 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 박물관 문서는 일제가 물러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미정리 상태로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분류 · 정리하여 목록집이 간행되었고 현재 번역작업중이다. 박물관 문서는 그 분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목록』(1996)과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 목록집』(1997)에 의하면 상당한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목록집에 의하면 1912년(대정 원년)부터 1945년(소화 20년)까지의 문서가 보인다. 문서의 내용은 박물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편철되어 있으며, 편철은 표지에 문서의 제목과 생산연도가 기재되어 있고, 맨 앞장에 문서번호와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는 가장 늦게 생산된 문서를 제일 앞에 두고 차례로 편철되어 있다. 그러면 문서의 내용을 위에 언급한 목록집에 의거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문서의 분류는 일제하 당시 총독부 박물관의 업무에 의해서 보다는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편의상 1)보존(保存) 2)발견(發見) 3)구입(購入) 4)진열(陳列) 5)기부(寄附) 6)고적조사(古蹟調査) 7)국유림(國有林) 8)지정(指定) 9)도면(圖面) 10)지도(地圖) 11)신문보도(新聞報道) 12)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 보존문서는 유물 · 유적의 상황과 수리 · 수선에 대해 지역별, 연도 순으로 정리한 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 문서들은 일제하 문화재의 관리상황과 그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보존문서의 경우 ①분류번호, ②보존번호, ③제목, ④소재, ⑤사양서, ⑥내역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양서」에는 당시 문화재의 상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일제의 문화재 관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손된 문화재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문화재를 복구하는데 많은 참조가 된다. 또한 「내역서」에는 수리공사를 하는데 소용된 기자재(機資材) 및 인력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있고, 특히 수리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의 공사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문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총독부 학무국과 해당 지역 관리자간의 공문서이다. 이것을 보면 일제의 문화정책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2) 발견문서는 각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박물관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기안문서의 서식은 ①문서번호 ②작성·발송 일자 ③작성처 ④수신처 ⑤제목 ⑥내용 ⑦부기 ⑧첨부 순으로 되어 있다. 일제하 유물과 유적은 대부분 조사·발굴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어 중앙의 경복궁 박물관에 전달되었다. 따라서 발견문서는 일제하 박물관의 업무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3) 구입문서는 총독부 박물관에서 구입한 유물과 관련된 문서이다. 총독부 박물관에서 유물을 발굴·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개인 소장자로부터 유물을 구입하였다. 이 문서에는 유물의 구입비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가 문화재를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4) 진열문서는 총독부 박물관에서 진열된 유물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연도별로 되어 있어 당시 박물관에 진열된 품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 단체에 대출한 유물도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물의 움직임도 알 수 있다.

5) 기부문서는 발견 · 발굴 혹은 구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소장의 유물을 기증 · 기부한 경우에 대해 작성된 문서이다. 즉, 당시 총독부 박물관에 특정 개인이 유물을 기부하여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유물에 대한 문서이다. 그러나 그 분량은 극소수이다.

6) 고적조사 문서는 각종 유물 · 유적을 총독부 박물관에서 조사한 문서이다. 실제로 총독부 박물관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서이다. 물론 고적 조사발굴에 대해서는 일부 책자로 간행된 경우도 있었으나, 책자로 소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다.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총독부 박물관은 고적조사를 통해 문화유적을 발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물이 수집되었다.

7) 국유림문서는 일제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국유림 내에 있는 유물 · 유적들에 대한 상황 조사서이다. 당시 일제가 광범위한 임야를 국유림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물과 유적이 국유림 내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유림 내의 유물 · 유적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8) 지정문서는 〈고적 및 유물보존령〉과 〈고적 및 유물보존 규칙〉 등에 의해 보물고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조사 보고에 대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유물 유적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많이 포함되어 일제 문화재에 대한 원형을 잘 볼 수 있다.

9) 도면은 총독부 박물관에서 조사한 유적에 대한 도면이다. 여기에는 실측도와 유적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적 발굴 당시의 실상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현재 도면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8부터 『광복이전 조사 유적유물 미공개 도면』(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으로 간행되어 있다.

10) 지도는 고분 등 유적이 소재한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11) 신문보도는 일제하 일본 신문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에 소개된 문화재에 대한 것과 유물 · 유적에 대한 보도를 스크랩한 것이다.

12) 기타는 경복궁 박물관 이외에 다른 박물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각종의 문서이다.

2)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체제

위에서 간략하게 박물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박물관 문서관리 체계를 살펴보자. 우선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유물의 관리와 보존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대장법(臺帳法)이 채용된 점이다. 대장법은 1916년 7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조선의 고적을 조사연구하던 구로이타 가쯔미(黑板勝美)가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장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그의 주장에 따라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에 대폭 반영되었다.[31] 따라서 총독부 박물관도 이 규칙에 의해 등록 보존하였다고 판단된다.

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부터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를 확연하게 알기 힘들다. 따라서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견문서' 를 중심으로 문서의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견문서는 각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에 대한 문서이다. 유물과 유적의 발견과정은 대부분 지방의 경찰서장이 유물을 발견한 '발견자나 발견지 소유자' 의 '매장물 계출' 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발견문서의 체계는 매장물을 계출받은 해당 경찰서장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제3조[32] (1933년 12월 이후는 〈보존령 시행규칙〉 및 〈보존

31) 李成市,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252쪽.

32) 〈古蹟 및 遺物保存規則〉 제3조는 다음과 같다. "古蹟 또는 遺物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에 변경을 가하지 말고, 3일 이내에 口頭 또는 書面으로 그 지방 警察署長에게

령 시행수속〉에 의함) 및 〈유실물법〉(遺失物法) 제13조[33]에 의해 취급하였다. 특히 1926년 12월 22일 통첩 제74호로 〈학술기예(學術技藝) 또는 고고(考古)의 자료(資料)로 제공될 매장물(埋藏物) 등의 취급(取扱)에 관한 건〉[34]이 공포되면서, 매장물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은 출토의 상황, 발견 월일, 발견 · 계출 월일, 발견자 및 발견지주의 각각 주소 · 이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매장물 발견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으로 학무국장에게 보고된다.

매장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보고받은 해당 경찰서에서는 곧바로, 서식대로 구비하여 총독부 학무국에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학무국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학술 ·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 가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찰관서에 이를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매장물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 이 매장물은 1912년 제령 제23호 및 〈유실물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국고귀속품이 된다. 이후 총독부 박물관에 진열 보관한다고 규정하였다.

'발견 문서' 에는 보통 ①명칭 ②종류 및 형상대소 ③소재지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와 이름 ⑤현황 ⑥유래전설(由來傳說) 등 ⑦관리보존의 방법 ⑧비고 등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별지(別紙)로 '부근견취도(附近見取圖)', '평면도(平面圖)', '발견장소도(發見場所圖)', '사진

계출한다. 警察署長은 전항의 계출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前條의 사항을 조사하여 朝鮮總督에게 보고한다."

33) 〈遺失物法〉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埋藏物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제외하고 本法의 規定에 準用한다. 學術技藝 혹은 考古의 資料로 제공될 埋藏物로서 그 소유자를 알지 못하면 그 소유권은 國庫에 귀속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國庫는 埋藏物의 발견자 및 埋藏物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지급한다."(朝鮮總督府 編纂, 『朝鮮法令輯覽』 上卷 1, 1940, 110-111쪽).

34) 〈學術技藝 또는 考古의 資料로 제공될 埋藏物 등의 取扱에 관한 件〉 通牒 제74호, 『朝鮮總督府官報』 71권, 아세아문화사, 1986, 921-922쪽.

(寫眞)' 등이 첨부되었다. 이때 해당 경찰서장은 도경찰부장(道警察部長)을 경유하여 각도 도장관(道長官;知事)을 통해 학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해당 경찰서장이 직접 학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35] 학무국장은 보고서를 보고 해당 유물이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참고자료가 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도지사에게 현품(現品)을 총독부 박물관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도지사는 보통소포편으로 경복궁 박물관에 송부한다. 현품이 도착하면 총독부 박물관협의원(博物館協議員)들이 학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심의한다. 즉 위의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제공될 매장물 등의 취급에 관한 건〉 제4조에 의하면 "박물관협의원으로 하여금 매장물을 평가하게 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일 때에는 적당한 평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에 의해 보상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매장물이 참고자료가 된다면 '발견자 및 발견지 토지소유자'에게 보로금(報勞金)으로 평가액의 반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해당 도지사에게 통지한다.[36] 그에 따라 해당 도지사는 발견자 및 발견지 토지소유자가 발견 계출한 매장물에 대한 보로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학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위의 절차를 도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장물 발견자 해당 경찰관서에 계출 → 해당 경찰서장 조사 후 학무국장에게 보고 → 학무국장 조사후 → 해당 도지사에게 현품을 총독부 박물관에 보낼 것을 지시 → 총독부 박물관협의원 현품 심사 → 발견자 및 발견지 토지소유자에게 보로금 지급

35) 1933년 12월부터 도지사가 '보존령 시행수속'에 따라 중앙의 조선총독(학무국장)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36) 보로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 〈매장물(埋藏物)에 관한 규정(規定)〉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문서는 매장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매장물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혹은 방매하려 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을 경우에도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면 〈유실물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해 권리 폐기 또는 상실되었다. 또한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제공될 매장물 등의 취급에 관한 건〉 제5조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제1조의 유물 기타 학술기예 혹은 고고의 자료로 제공될 매장물을 은닉 기타 범죄관계에 의해 해당 관청에 몰수된 것" 등은 보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컨대 무단으로 유물 등을 발견하고 계출하지 않고, 그것을 팔려고 배회하던 중 경찰서에 체포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도 그 절차는 대부분 위와 같지만 무단 소지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랐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였다. 일제하 법을 모르는 조선인들이 무심히 매장물을 소지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고역을 치르는 일도 많았다.[37] 그리고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안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계출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폐기되어 보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38]

한편 박물관 내의 문서의 관리체제는 우선 학무국에 도착된 해당 경찰서장의 보고서식을 학무과(종교과, 고적조사과, 사회과, 사회교육과)에서 검토하여 학무국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문서가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발견된 매장물 현품은 위에 잠시

37) 이런 경우 매장물 소지자는 총독부에 발견 매장물을 돌려달라는 「진정서」를 보내는 일이 많았고, '박물관 문서' 에는 그러한 진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진정서는 보통 국한문으로 쓰여있고, 일본인 관헌들이 볼 수 있게 다시 일본어로 번역되어 첨부되어 있다.

38) 〈遺失物法〉 제9조는 다음과 같다. "拾得物 등은 本法의 規定에 準用할 물건을 橫領함에 의해 處罰된 자 및 拾得日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수속을 하지 않는 자는 제3조의 費用 및 제4조의 報勞金을 받을 權利와 拾得物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

언급한 것과 같이 박물관에 송부된 다음 총독부 박물관협의원들이 학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평가서에는 유물명, 단가, 가격, 발견장소 및 발견자가 기재되고,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박물관협의원들의 도장을 받았다. 박물관협의원들은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이마니시 류(今西龍), 오다 쇼고(小田省吾), 후지타 료우사쿠(藤田亮策), 스에마쯔 구마히코(末松熊彦) 등 너무나 잘 알려진 식민관학자들로 구성되었다.

4.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보존과 이용 방향

이들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총독부 박물관 문서는 일제하 ①유물과 유적의 발굴과정 ②문화재의 관리 보존방법 ③문화재에 대한 수리 · 수선 공사 과정 ④박물관의 운영체계 등 문화정책 일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를 통해 그 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일제시대 문화재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보통 시간이 지난 문서들은 현용성 보다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만을 지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역사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현재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하겠다.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현재 활용방안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문화재 복원에 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물관 문서에는 당시 문화재의 현존상태 발굴경위 및 수리 · 수선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외 도면 및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어 그 원형을 복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유물과 유적에 대한 도면 및 사진자료는 당시의 문화재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교육적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로 총독부 박물관 소장의 문화재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와 비교하여 그 보존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총독부 박물관 소장 유물이 현재 망실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 그 과정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일제하 발굴 및 발견 문화재가 불법으로 유출된 경우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법적 증거물' 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총독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된 경우,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요컨대 총독부 박물관에서 발굴 혹은 구입한 문화재가 유출되었을 경우 박물관 문서는 문화재를 되돌려 받을 가장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 개관된 이래 일제 말기까지 조선의 문화유적 및 유물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 박물관 문서는 일제하의 전반적인 문화재 정책을 살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총독부 박물관은 일제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구가 여러 차례 개편되었으나, 그 업무의 영역은 박물관 문서를 통해 볼 때 유물과 유적의 보존 · 발굴 · 수리 · 진열 등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하겠다. 결론에 대신하여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정리와 보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다. 현재 총독부 박물관 문서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목록집이 간행되어 있어 그 이용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집』은 현재 목록집 체제로 정리되

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총독부 박물관의 문서관리체제를 확연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일제하의 박물관 문서관리체제로 복원하여 다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문서에 대한 상세한 '해제집'과 '색인집'을 간행되어야 하며, 이 문서를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인본' 혹은 '번역본'이 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①문서량이 방대하여 그것을 전부 영인·번역해 내기는 힘들고, ②문서는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나 간혹 난초(亂草)가 있어 역사적 지식과 박물관 업무에 정통한 전문 번역인을 필요로 한다.

총독부 박물관 문서가 정리되고 분류된 상황에서 문서를 통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①문서 소재 문화재 사진 및 도면집 간행 ②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발굴 경위서 간행 ③총독부 박물관 문서를 통해 본 소장 문화재 발굴 경위서 간행 ④총독부 박물관 문서 중 번역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간행 ⑤총독부 박물관 문서 소재 문화재 중 특정 주제를 정해 그것에 대한 책자 간행 ⑥문서 가운데 '왕복문서'만을 정리 번역하여 '일제의 문화재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총독부 박물관 문서는 그 활용에 있어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문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실에 정리·보관되어 있으나, 문서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고, 이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광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영구 보존을 위한 항산(抗酸) 저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의 제안사항이 완전히 수행되어야만 진실로 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의의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활용한 연구자들이 많아져야만 문서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Document of Museum of Chosen General Government and its systemic management of document

Kim, Do-Hyung

The Museum of Chosen General Government(MCGG) was a supreme organ to take charge of business affairs of historical remains in Japanese imperial rule. The MCGG was established in Kyongbok Palace in 1915. The MCGG was changed the reorganization of the Chosen General Government(CGG) setups, the MCGG was to maintain the cultural assets, to excavate the ruins and to put on display the remains.

However, the Japanese colonist took advantage of the MCGG for political purposes. They didn' t use the MCGG to promote the research of Korea culture. Therefore, the MCGG was an organization to belong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CGG. In this reason, the MCGG produced the amount of public document to business affairs. Now, This document left in the Museum of Korea.

We have seen the document to study the cultural policies and the cultural assets of the CGG. This document includes the abundant information for the historical remains and ruins at that time. Accordingly, this document will help to survey the archaeological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In addition, this document will help to manage the cultural assets. What then is the advantage of this document?

The first is to see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CGG through this document. The Japanese colonist took advantage of Korean history, which was low-grade culture, to justify rule of the colony. Therefore, they

needed to collect Korean assets to verity their theory.

The second is to see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MCGG. Indeed, this document includes information of organization of the MCGG, th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the MCGG. In substance, we can see the systemic proceedings of the MCGG.

The third is to provide historical materials to the historian. This document has the persons to plan the colonial culture policy of the MCGG, and events to rule the Korea culture.

Moreover, the document of the MCGG would help to inquire into the truthfulness of history and to get the national identity.

KCI